

---

# 2025년도 국가자격검정 시험문제지 보안운송 과 업 지 시 서

---

2024. 12. 16.



ICT자격본부 검정관리팀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 (1) 적절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 (2)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3)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6)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7)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9)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0)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1)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2)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3)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14)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15)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 (16)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 (17)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 (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 1. 공고건명 : 2025년도 국가자격검정 시험문제지 보안 운송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2025년도 국가자격검정 시험문제지(실기재료 및 문답지 포함)의 안정적 운송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 2. 계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31.
- 운행구간 : 불임참조

## 3. 사업예산 : 금23,700,000원(금이천삼백칠십만원/VAT포함)

##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7603]**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바.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5. 과업내용 : 붙임2 ‘과업세부사항’ 참조

## 6. 기타사항

-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예산회계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계약예규 등이 적용되므로 견적업체는 본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업체에게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함

※ 사업 및 제안요청 관련 문의 : ICT자격본부 검정관리팀 김도현 (☎ 061-350-1644, kodo1220@kca.kr)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안전경영지원단 재무회계팀 김도현 (☎ 061-350-1343, dohyeon021@kca.kr)

- |                     |        |
|---------------------|--------|
| 붙임 1. 투찰액 산정방법      | 1부.    |
| 2. 과업 세부사항          | 1부.    |
| 3. 용역계약특수조건         | 1부.    |
| 4. 운전자 서약서          | 1부.    |
| 5. 운송경로 및 일정(별도 첨부) | 1부. 끝. |

<붙임1>

# 투찰액 산정방법

※ 붙임의 “2025년도 국가자격검정 시험문제지 운송경로 및 일정”을 참조하여 운송경로별 운행횟수를 곱한 합산금액으로 투찰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추정운송 내역

권역	권역별 운송구역(출발지 → 목적지)	비고
1	나주 → 충청(대전 서구) → 서울(서울 송파구) → 북서울(서울 마포구)	기술사 운송
2	나주 → 전남(광주 서구) → 경북(대구 수성구) → 부산(부산 동구)	기술사 운송 정기검정 운송
3	나주 → 충청(대전 서구) → 강원(강원 원주) → 서울(서울 송파)	정기검정 운송
4	나주 → 전북(전주 덕진구) → 경인(인천 남동구) → 북서울(서울 마포구)	정기검정 운송
5	북서울(서울 마포구) → 서울(서울 송파구) → 충청(대전 서구) → 나주	기술사 회수
6	부산(부산 동구) → 경북(대전 수성구) → 전남(광주 서구) → 나주	기술사 회수 정기검정 회수
7	서울(서울 송파구) → 강원(강원 원주시) → 충청(대전 서구) → 나주	정기검정 회수
8	북서울(서울 마포구) → 경인(인천 남동구) → 전북(전주 덕진구) → 나주	정기검정 회수

## 2. 투찰방법 : 반드시 총액으로 투찰할 것

○ 산출방법 : 운행횟수 × 계약단가 = 금액

1권역	: 2회 ×	_____ 원	=	_____ 원
2권역	: 6회 ×	_____ 원	=	_____ 원
3권역	: 4회 ×	_____ 원	=	_____ 원
4권역	: 4회 ×	_____ 원	=	_____ 원
5권역	: 2회 ×	_____ 원	=	_____ 원
6권역	: 5회 ×	_____ 원	=	_____ 원
7권역	: 3회 ×	_____ 원	=	_____ 원
8권역	: 3회 ×	_____ 원	=	_____ 원

함으로 총액 투찰

<붙임2>

# 과업세부사항

- 1. 과업명 : 2025년도 국가자격검정 시험문제지 보안 운송
-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2. 31.
- 3. 과업대상 :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문제지(실기재료 및 문답지 포함)

## 4. 과업내용

### 가. 운송차량(운전자) 지정

- 운송 차량 : 화물용밴
  - 배기량 2,000cc 이상, 3~5인용 밴차량 추천
- 1회 차량 대수(인원) : 차량 3대(운전자 포함)
- 구비조건
  - (차량) 2020년 이후 출고 차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종합보험(대인, 대물등)에 가입된 차량으로 장거리 화물운송에 적합하도록 정비 및 성능이 구비된 차량으로 착수계 제출 시 아래 서식에 따라 '장비현황 총괄표' 제출
  - '장비현황 총괄표'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 진흥원 직원이 동승함에 따라 안전을 고려하여 에어백 필수 설치
- 계약목적물 운송은 진흥원 직원 1~2명이 탑승하여 운행하는 조건
- (운전자) 5년 무사고 운전자로 지정하여 재직증명서(운전 경력),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등 제출

○ 계약단가에 포함되는 사항

- 계약단가에는 부가가치세, 주차료, 유류비, 유료도로 통행료, 기사운임, 기사식대 등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을 포함

※ 운송 중 발생한 각종 과태료 및 교통위반 범칙금은 업체부담

나. 계약목적물 운송

○ 운송경로 및 일정 : 붙임참조

※ 시험상황에 따라 노선수(차량대수), 운송경로(출발·경유·도착지) 및 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차량(운전자) 배차

- 계약체결 시 지정한 차량(운전자)을 오염물질이 없고 냄새가 나지 않는 등 청결하게 청소하여 배차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 차량 또는 운전자를 배정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구비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및 운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대체 배정

- 진흥원에서 정한 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지에 차량을 대기

○ 운송 및 상하차

- 계약목적물 운송은 진흥원 직원 1~2명이 탑승하여 운행하는 조건

- 진흥원에서 지정한 노선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흥원 탑승직원의 사전인가를 받아 노선 변경가능

- 운송 중 고장·교통사고 등으로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대체차량을 즉시(3시간 이내) 투입하여 계약목적물을 안정적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조치

- 운전자는 진흥원 직원(차량 탑승자) 요구에 따라 계약목적물 상·하차를 보조하여야 함

- 왕복 운송의 경우 운전자 및 차량이 교체되면 안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흥원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기 타

- 운전자는 서약서 <붙임4>를 제출하고 동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발주자”라 한다.) 이 \_\_\_\_\_(이하 “공급자”라 한다.)에게 국가자격검정 시험문제지(실기재료 및 문답지 포함)(이하“계약목적물”이라 한다.) 운송을 용역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업무) ① 발주자는 운송일 15일전까지 필요 차량대수, 운송경로(출발지·경유지·최종목적지), 운송일시 등을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공급자는 발주자의 통보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운송한다.

② 공급자는 제3조에 따라 배차할 차량(운전자 포함)의 명세서를 운송일 10일전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제1항에 정한 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지에 차량을 대기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에서 지정한 노선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운송한다.

④ 공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상·하차한다.

제3조(차량 및 운전자 배정) ① 계약목적물 운송 차량은 아래 1호 내지 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고 동 운송 차량 운전자는 공급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래 5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20년 이후 출고 차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대인, 대물 등)에 가입된 차량
2. 장거리 화물운송에 적합하도록 정비 및 성능이 구비된 차량
3. 적재함은 시건이 가능해야 하며, 오염물질이 없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등 청결한 차량
4. 화물용밴(3~5인용 밴 포함) 차종으로 운송보안 책임자로서 진흥원 직원 1~2명이 탑승 가능한 차량
5. 운전자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 일 것.

② 공급자는 제2조 제1항의 발주자의 통보에 따라 차량을 배차한다. 이 경우 배차할 차량(운전자 포함)은 계약체결 시 지정한 차량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차량을 배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차량(운전자 포함)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는 제1항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공급자가 제1항의 각 호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배차한 경우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비밀의 준수)** 공급자는 이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책임과 의무)** ① 공급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제2조의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안전과 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계약목적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천재지변, 사변,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공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운전자 파업은 제외)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 제1항의 발주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④ 공급자는 제2조의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주지시키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제3조에서 정한 운전자가 “붙임4”의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여야 하고 해당 서약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2조의 용역 업무를 완료한 이후 공급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계약체결 시 정한 회차별 기준[구간별 추정단가 금액]에 따른다.

② 계약체결 시 정하지 않은 노선의 단가는 운행시간이 유사한 노선의 단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비교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발주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조에서 정한 용역업무 이외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지게차사용 등)를 수행한 경우는 발주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그 비용을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단가는 부가가치세·주차료·유류비·유료도로 통행료·기사운임·기사식대 등 운송에 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급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단가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출발지체금)** 공급자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간까지 차량을 출발지에 대기하지 않아 출발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연된 차량 댓수 및 시간마다 해당 노선별 계약단가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발지체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0분 초과 1시간 이하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제8조(운송차량의 탑재 제한)** 공급자는 발주자의 소속직원 1~2명과 계약목적물 이외의 사람 또는 물건을 탑승·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검수 및 검사)** 공급자는 제2조의 용역 업무를 완료한 이후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송중의 사고)** ① 공급자는 운송도중(상·하차시 포함) 사고로 인하여 계약목적물 운송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차량 고장 및 사고 등으로 계약목적물 운송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즉시 대체 차량을 3시간 이내 투입하여 용역 업무를 계속하게 한다.
2. 기타 도로장애 등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운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제2조 용역업무 중 계약목적물을 적재한 이후부터 하차시까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계약목적물 분실·훼손 및 사고로 인한 검정 업무의 지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발주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비용 : (접수수수수료 x 수험자수) + 기타비용(고사장대여 등)

※ 다만, 계약상대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공급자는 이 용역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연락처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야기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 제10조에 따라 발주자의 업무에 차질을 주었을 경우

가. 1회 : 경고

나. 2회 : 계약해지

2. 제3조에 따른 차량 및 운전자를 배정하지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 경고

나. 2회 : 계약해지

3. 기타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2호와 제4호 규정에 따라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는 공급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귀속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3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계약특수조건은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우선하고 이 계약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계약사무처리규정」,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등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붙임4>

## 운전자 서약서

본인은 계약목적물을 운송함에 있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차량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한다.
2. 반드시 정해진 코스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다.
3. 계약목적물 운송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진흥원 탑승직원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4. 차량에서 절대 이탈하지 아니한다. 단, 화장실 출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이탈할 경우는 진흥원 직원과 교대한다.
5.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등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진흥원 및 해당 업체(책임자)에 즉시 보고한 후 차량을 즉시 교체 투입하는 등 문제지가 신속히 운송될 수 있도록 긴급조치 한다.
6. 계약목적물 운송과 관련한 일체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5년 1월 일

운 전 자 : (인)